

의 안 번 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21. 9. .

의 결
사 항

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 요구[안]

제안연월일	2021. 9. 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관련 추진상황 보고 요구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1. 9.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최근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된 「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」 과 관련, 구미시의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함.

2. 내 용

가. 보고일자 : 2021. 9. 15.(수)

※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나. 보고대상 : 구미시장

다. 보고장소 : 구미시의회 본회의장

라. 보고사항 : 「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」 관련 추진상황 보고

3. 관련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